

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09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월 2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의 취·창업 확대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·운영하고,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
- 나. 여성의 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및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,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운영
- 나. 위탁유형 : 시설위탁
- 다. 위탁기간 : 3년(2022.5.1. ~ 2025.4.30.)
- 라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-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 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추진 필요성

- 여성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가 필요하며,
- 여성인재양성 및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, 취·창업 지원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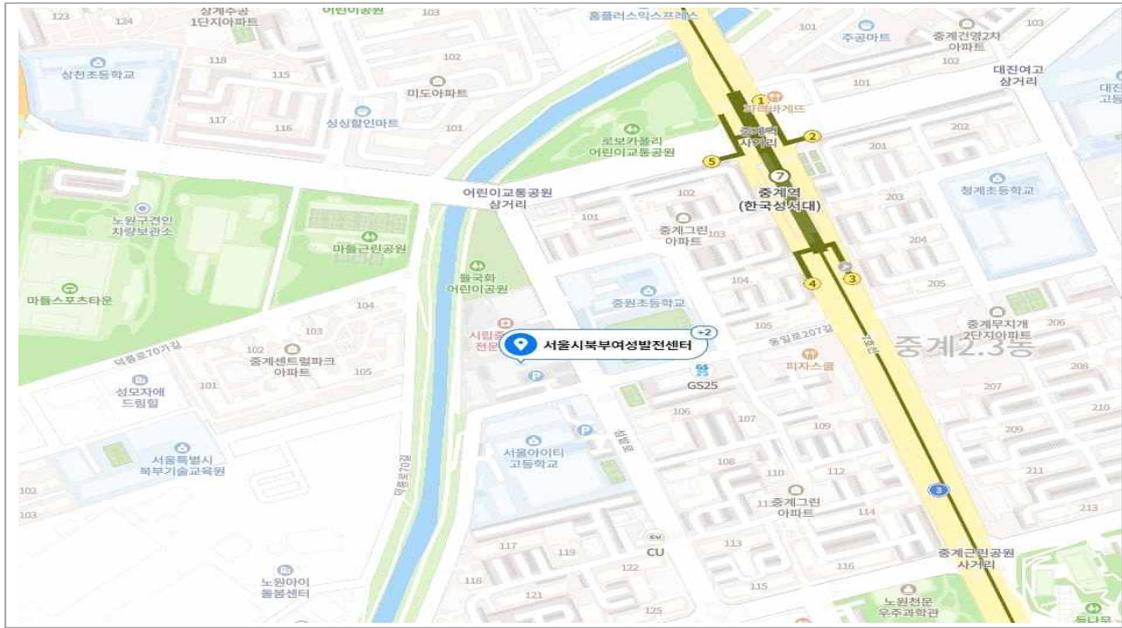
마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

-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,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·운영
- 여성의 취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·상담·알선 및 고용유지사업
- 여성의 창업을 위한 정보제공·상담 및 여성창업자 육성사업
-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,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등
- 그 밖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

바. 위탁시설 개요

- 소재지 :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07길 50(중계동)
- 규 모 : 대지 4,959m²/건물 4,910m²(지하1층,지상4층,창업보육센터)
- 시설현황 : 강의실, 컴퓨터실, 실습교육실(피부관리, 제과·제빵, 조리, 헤어디자인, 의상디자인 등), 상담실, 창업보육센터, 북부새로일하기센터 등
- 인력현황 : 12명
 - 센터장 1명, 관리팀 4명, 교육팀 4명, 취업팀 3명

○ 위치도



사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
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2.1.11.)

아. 소요예산 : 금1,174백만원(2022년 예산)

- 인건비 623백만원, 사무비 등 336백만원, 시설물유지관리비 215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25조

제4조(여성관련시설의 종류)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·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4. 여성발전센터 :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, 취업·창업 지원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제25조(관리·운영의 위탁 등) 시장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여성관련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9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종합성과평가 비대상, 별도평가체계에 따라 실시(여성능력개발원 주관)
- 근 거 : 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,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
제10조제1항

※ 작성자 :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팀 하혜정(☎ 2133-5030)